



이태형 국제위원장  
(주)청운건축 전문  
tedhlee@unitel.co.kr

# 設計圖書의 缺陷에 對한 構造設計者의 不眞正連帶債務

(Structural Engineer's co - Liabilities for Torts due to the Defects of Design and Engineering Documents)

**Q** 최근 준공된 건물의 부실공사 시비로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간 법정 다중중 구조설계자도 구조제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사 관여자로서 민사상 부진정연대채무를 질수 있다고 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란 법적으로 어떤 책임입니까?

(\*K구조 L소장)

**A**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공사발주자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수단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대표적으로 들 수있고 이외에 특별불법행위 책임의 일종으로 사용자 책임과 토지 공작물 책임 그리고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데,

구조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구조설계자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특히 정보제공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지적전문가가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정보제공자는 그 정보의 오류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Turn-key계약을 제외하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공사발주자)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보아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면제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판례 또한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공사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판례 98다24975)하여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설계용역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조설계도서상 공사정보에 결함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완전하여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야기된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계약 책임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설계자로부터 구조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경우 구조설계자와 구조설계도서 이용자 혹은 건축주 등 제3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상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책임 추궁이 아니라 불법행위 영역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750조) 불법행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고 채무불이행은 계약에 반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위법행위가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판례는 두책임 각각 그 법률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 경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82다카1533)

설계도서의 결함의 경우 건축주, 공사수급인 또는 제3자등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설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①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②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기인했다는 것 ③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의료행위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전문가의 불법행위는 공평·타당의 이상을 기초로 과실추정의 법리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대판 98다 10472)

입증책임부담 문제로 통상 피해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모든 공사 관여자를 공동의 가해자로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데 공동행위가 아니고 수인의 행위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를 포함하여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게 됩니다. (제760조)

64면에 계속